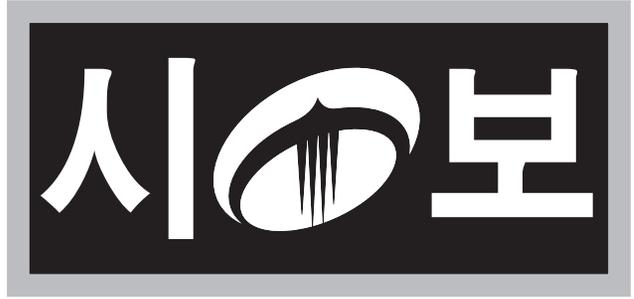


포 향 시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제733호

2009. 6. 16(화)

선	기 관 의 장
람	

포 향 시

◀ 조 려 ▶

- 포항시 에너지기본 조례(제940호) 2
- 포항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제941호) 10
- 포항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설치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제942호) 15
- 포항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제943호) 21
- 포항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944호) 23
- 포항시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제945호)..... 27
- 포항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제946호) 30

◀ 공 고 ▶

- 공 인 공 고(제2009-727호) 33
- 무단방치차량강제처리(폐차)공고(제 2009-729호) 35
- 第156回 浦項市議會(第1次 定例會) 集會公告(의회공고 제5호) 40

회								
람								

조 례

포항시의회에서 의결된 포항시 에너지기본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포 항 시 장 박 승 호

2009년 6월 16일

포항시 조례 제 940 호

포항시 에너지기본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에너지기본법」 제4조에 따라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기본원칙과 포항시·사업자·시민의 책무 등을 규정하고, 이를 통하여 에너지이용의 효율화와 합리적인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 원칙) 포항시(이하 “시” 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 원칙으로 하여 에너지 관련 시책을 추진한다.

- 1. 에너지 저소비형 경제·사회 구조로의 전환 원칙
- 2. 환경친화적인 에너지 생산 및 이용 촉진의 원칙
- 3. 에너지의 효율적 사용 및 신 재생에너지의 적극적 활용
- 4. 국가 및 국내·외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의 원칙
- 5. 에너지 관련 정보 공개와 시민 참여의 원칙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에너지기본법」 제2조 및 「경상북도 에너지기본 조례」 제3조 각 호에서 정의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에너지이용 주체별 권리·책무

제4조(시의 책무) ① 시는 정부시책 및 도의 에너지이용합리화 실시 계획 및 신 재생 에너지 실행 계획에 따라 지역특성을 감안하여 자체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는 지역적 특성에 맞는 에너지 자원의 발굴과 신 재생에너지 및 미활용 에너지의 보급을 위한 실행방안 등 지속 가능한 에너지 공급체계를 마련한다.

③ 시는 학교·시민·시민단체의 연구 및 홍보 사업과 자발적인 에너지 이용 합리화 활동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한다.

④ 시는 시민이 고효율기자재를 손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그 이용정보를 시민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5조(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에너지 소비로 인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시의 시책에 대하여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제품의 제조·가공·유통·판매·처리의 전 과정을 저소비, 고효율형 에너지 절약 시설로 전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시의 요청이 있을 경우 사업 활동과 관련된 에너지 사용정보 제공에 적극 협조 한다

④ 사업자는 시민·시민단체·학교 및 연구기관의 연구 및 홍보사업 등 에너지 이용

합리화 활동이 지역사회에서 확산될 수 있도록 협조 한다.

제6조(시민의 권리 및 책무) 시민은 다음 각 호의 권리 및 책무를 가진다.

1. 시민은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를 안정적이고 형평성 있게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에너지정보에 접근할 권리를 가진다.
2. 시민은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고효율에너지 제품 및 친환경 제품을 우선 구매·사용하여 에너지 절약에 노력하여야 한다.
3. 시민은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신 재생에너지 등 친환경적인 에너지 이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4. 시민은 시의 에너지 계획 및 시책 수립에 참여하고 에너지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5. 시민단체는 시 및 사업자의 효율적인 에너지 이용 시책 추진 시 적극 협조하도록 노력한다.
6. 시민단체는 제5호의 시책에 대한 감시·평가·제안 및 실천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

제7조(학교 및 교육기관의 책무) ① 학교 및 교육기관은 청소년들이 에너지의 중요성, 에너지 절약의 필요성 및 환경보전을 위한 노력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할 수 있다.

제3장 에너지 계획

제8조(에너지이용합리화 실행계획) ① 시장은 에너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해 포항시 에너지이용합리화에 관한 실행계획(이하 “합리화 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3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② 합리화 계획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가. 공공기관 및 민간부문의 연간 추진계획
- 나. 에너지 대체와 관련 기술 개발 및 이용을 위한 연차적 추진사항

- 다. 온실가스의 배출감소를 위한 연차적 추진사항
- 라. 에너지 이용의 합리화를 위한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제4장 에너지위원회 운영

제9조(설치) 시장은 에너지시책 등을 자문·심의·조정하기 위하여 포항시 에너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10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한다.
- ② 위원은 당연직 및 위촉직으로 하되, 당연직위원은 부시장, 전략사업추진본부장, 경제산업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시의회 의원, 에너지 관련 전문기관이나 시민단체의 관련 전문가 등 각 계 인사 중 시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 ③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④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미래산업팀장으로 한다.

제11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과 사무를 관장한다.

1. 에너지 관련 기본 시책의 개발과 평가
2. 에너지 시책에 대한 모니터링
3. 신 재생에너지 개발사업 선정 및 타당성 검토
4. 기타 에너지 정책에 관한 사항

- 제12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 및 업무를 총괄한다.
-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회의) ① 위원회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제14조(준용) 기타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포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 한다

제5장 부문별 에너지시책

제15조(공공부문 에너지시책) ① 시장은 에너지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통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민간부문의 에너지 절약 분위기를 선도하며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연도별 에너지 절감 목표의 설정·관리
2.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사용의 활성화를 위해 공공건물 신축 시(증·개축 포함) 고효율제품 및 환경표시 인증제품을 사용하고, 소비 에너지를 신 재생에너지로 적극 수급하여야 한다.
3. 사무용 기기를 신규로 구입하거나 교체할 경우, 에너지절약마크 표시제품 및 친환경제품 사용
4. 시 및 산하기관이 운영하는 모든 시설의 조명기구 교체·설치 시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설치

② 공공부문 에너지 절약 시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장한다.

1. 각 기관의 특성에 맞는 에너지절약 사업의 추진
2. 공공건물 에너지 효율 제고를 위한 에너지관리진단 실시
3. 계절별 실내 적정온도 준수
4. 업무용 관용차량 경차구입 및 관용차량 부제 실시
5. 시장은 에너지 관련 제품을 구입하거나 건축·토목공사를 계획·시행함에 있어

에너지절약제품의 사용과 신 재생에너지 이용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산업부문 에너지시책) ① 시장은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25조에 의하여 에너지 절약형 시설에 투자하는 사업자에 대한 정부의 지원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속 가능한 에너지체계를 위하여 사업자가 사업장 내에서 발생하는 폐열의 이용 등 미활용 에너지의 자원화 및 산업체의 신 재생 에너지의 이용을 적극적으로 장려하여야 한다.

제17조(건물부문 에너지시책) ① 시장은 건축법에서 정하는 건축물의 열손실 방지·에너지 절약 계획서의 제출 등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조치가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지도·감독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건축물에 태양열·광, 지열 등 신 재생에너지 설비의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건축물 개·보수 시 건축주가 고효율에너지 기자재로 시공 하도록 유도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연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 다음 각 호의 공공건물을 신축 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건축물 총공사비의 5퍼센트 이상을 신 재생에너지 설비에 사용하여야 한다.

- 1. 업무(청사), 의료, 숙박, 위락, 판매, 운동시설
- 2. 문화, 교통, 복지, 관광휴게시설

제18조(수송부문 에너지 시책) ① 시장은 수송에너지 수요 증가를 가져 오는 승용차 수송체계를 지양하고, 에너지 효율이 높은 대중교통 중심의 체계로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무동력 수단의 활성화를 위하여 자전거 전용도로 확대, 보관소 등 이용 시설의 확충을 위한 예산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내 혼잡지의 차량진입을 억제하고 보행자의 보행권을 확보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지속적인 관리 감독을 하여야 한다.

제6장 에너지 시책 추진 관련 지원

제19조(신 재생에너지 보급) 시장은 관할 지역 내에 신 재생에너지를 확대보급하기 위한 제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신 재생에너지의 보급과 관련하여 인허가 등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명백한 규정이 없는 한 신 재생에너지가 보급될 수 있도록 장려하여야 한다.

제20조(설치의무기관장의 책무) 설치의무기관의 장은 신 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의무에 따른 소요예산의 확보, 건축허가 신청 시 검토서의 첨부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21조(재정지원 등) ① 시장은 에너지 정책수립 및 추진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세제·재정상 지원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속 가능한 에너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민·사업자·시민단체 또는 연구기관이 행하는 시설의 설치·운영 또는 조사·연구 등에 필요한 정보·기술·재정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2조(표창 등) ① 시장은 에너지절약과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거나 에너지 시책에 기여한 공이 있는 시민·시민단체·기업·공무원 등에 대하여 포상 또는 표창할 수 있다.
② 수상자에게는 상패·메달·상장 및 부상을 수여할 수 있으며, 소요되는 비용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정한다.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정이유

「에너지기본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포항시 에너지 시책 및 에너지관련 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시민의 복리향상, 에너지절약의 생활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에너지이용 주체별 권리·책무 (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

- 시장의 책무, 사업자의 책무, 시민의 권리와 책무, 학교 및 교육기관의 책무

나. 에너지 계획 (안 제8조)

- 에너지이용합리화 계획 수립 및 시행

다. 에너지위원회 운영 (안 제9조부터 제14조까지)

- 에너지시책 등을 자문·심의·조정
-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 15명 이내로 구성

라. 부문별 에너지시책 (안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

- 공공부문 에너지시책, 산업부문 에너지시책, 건물부문 에너지 시책, 수송부문 에너지 시책

마. 에너지 시책 추진 관련 지원 (안 제19조부터 제22조까지)

- 신 재생에너지 확대보급 위한 제반시책 강구 및 인허가 등 처리 시 장려
- 신 재생에너지 설치의무기관의 장은 소요예산 확보 등 필요한 조치강구
- 에너지정책 수립 및 추진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
- 시민·사업자·시민단체 활동에 필요한 정보·기술·재정 등의 지원
- 에너지시책에 공적이 큰 시민·시민단체·기업 등에 포상 또는 표창

포항시의회에서 의결된 포항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포 항 시 장 박 승 호

2009년 6월 16일

포항시 조례 제 941호

포항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

포항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포항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를 “포항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로 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제4조의2(외국인의 별정직공무원 임용) 시장은 법 제25조의2에 따라 외국인을 별정직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11조의2를 삭제 한다.

제11조(병역·육아휴직에 따른 인사관리) ① 별정직공무원이 법 제63조제1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4호에 따라 6개월 이상(출산휴가와 연계하여 법 제63조제2항제4호의 휴직을 한 경우에는 3개월 이상) 휴직한 경우에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당해 휴직자의 결원을 보충하기 위하여 임용하는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기간은 당해 휴직자의 휴직기간으로 본다.

② 법 제63조제2항제4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명령은 해당 별정직공무원이 원하는 경우 분할하여 할 수 있다.

제11조의3제2항 중 “제11조제1호” 를 “제11조” 로 하고 제3항 중 “당연 복직되며, 복직일 전일까지는 휴직기간으로 본다” 를 “당연히 복직된다” 로 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근무성적의 평정) 시장은 일반직공무원의 근무성적 평정방법·절차 등에 준하여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성적을 평정하여야 하며, 근무성적평정의 결과는 보수·임용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 신 설 〉</u></p> <p><u>제11조(휴직) 임용권자는 별정직공무원이 다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휴직을 명하여야 하고, 다음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u>1.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를 필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u> <u>2. 형사사건으로 기소된때(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한다)</u> <p><u>제11조의2(휴직기간) 제11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복무기간이 종료된 때까지로 한다.</u></p>	<p><u>제4조의2(외국인의 별정직공무원 임용) 시장은 법 제25조의2에 따라 외국인을 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u></p> <p><u>제11조(병역·육아휴직에 따른 인사관리)</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u>① 별정직공무원이 법 제63조제1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4호에 따라 6개월 이상(출산휴가와 연계하여 법 제63조제2항제4호의 휴직을 한 경우에는 3개월 이상) 휴직한 경우에 법 제41조 제1항에 따른 당해 휴직자의 결원을 보충하기 위하여 임용하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기간은 당해 휴직자의 휴직 기간으로 한다.</u> <u>② 법 제63조제2항제4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명령은 해당 별정직공무원이 원하는 경우 분할하여 할 수 있다.</u> <p><u>제11조의2(삭 제)</u></p>

현 행	개 정 안
<p>제11조의3 (휴직의 효력) ① (생 략) ② 제11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 직한 별정직공무원은 그 사유가 소멸 된 때에는 30일이내에 임용 권자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임 용권자는 지체없이 복직을 명하여 야 한다.</p> <p>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귀신고를 한 때에는 <u>당연복직되며, 복직일 전일 까지는 휴직기간으로 본다.</u></p> <p>제12조(병역복무휴직자의 결원보충) ① <u>별정직공무원이 제11조제1호의 사 유 로 6월이상 휴직한 경우에는 휴직일로부터 당해 휴직자에 대 한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 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u> ② <u>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원은 휴 직자가 복직된 이후 제3조제1항의 임용권자 단위기관내 휴직자 상당 계급에 최초의 결원이 발생된 때 에 소멸된 것으로 본다</u></p>	<p>제11조의3 (휴직의 효력) ① (현행과 같음) ② <u>제11조</u>----- ----- ----- ----- -----</p> <p>③ ----- ----- <u>당연히 복직된다.</u></p> <p>제12조(근무성적의 평정) 시장은 일반 직 공무원의 근무성적 평정방법·절 차 등에 준하여 <u>별정직공무원의 근 무 성적을 평정하여야 하며, 근무성 적평 정의 결과는 보수·임용 등 각종 인사 관리에 반영할 수 있다.</u></p>

1. 개정이유

특수경력직공무원(별정직공무원)의 외국인 채용이 가능하도록 임용제한 기준을 완화하고,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육아휴직시 결원 보충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공무원법 개정('08. 12월)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방별정직공무원 외국인 임용(안 제4조의2)

- 국가안보 및 보안·기밀관련 분야 이외에는 외국인을 지방별정직공무원으로 채용이 가능하도록 임용근거 마련

나. 지방별정직공무원 육아휴직 제도 개선(안 제11조)

- 육아휴직에 따른 결원 보충 및 육아휴직의 분할 사용

다. 근무성적 평정실시 근거마련(안 제12조)

- 임용권자는 근무성적을 일반직에 준해 정기 또는 수시로 평정하여 보수·임용 등 각종 인사관리 반영

포항시의회에서 의결된 포항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설치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포 항 시 장 박 승 호

2009년 6월 16일

포항시 조례 제 942호

포항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설치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

포항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설치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포항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설치에관한조례” 를 “포항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 설치에 관한 조례” 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문화예술공간의 설치권장) 시장은 법 제5조제2항 및 영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연장·전시장 등의 문화예술 공간을 설치하도록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이하 “건축주” 라 한다)에게 권장 하여야 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 법 제9조 및 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을 하

고자 하는 건축주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에 대하여 미술장식품을 설치하여야 한다.

1.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한다)
2. 제1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시행령 별표 1 3호바목에서 자목까지의 시설은 제외한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3.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집회장 및 관람장
4. 판매시설
5. 운수시설(항만시설 중 창고기능에 해당하는 시설 및 집배송시설은 제외한다)
6. 의료시설 중 병원
7. 업무시설
8. 숙박시설
9. 위락시설
10. 방송통신시설(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제3조제1항 중 “영 제24조” 를 “영 제12조” 로 하고, “법 제11조” 를 “법 제9조” 로 한다.

제5조 중 “영 제24조” 를 “영 제12조” 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영 제12조제1항제1호의 공동주택 : 1천분의 1 이상 1천분의 7 이하
2. 영 제12조제1항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건축물 : 1천분의 5 이상 1천분의 7 이하

제7조 중 “영 제24조” 를 “영 제14조” 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제2조(문화예술공간의 설치권장 대상 건축물)</u> 시장이 법 제9조제2항 및 영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연장, 전 시장 등의 문화예술공간을 설치하도록 권장하여야 할 대상 건축물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 4 규정에 의한 별표1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공동주택(다만, 500세대 미만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 제외)</u> 2. <u>업무시설</u> 3. <u>숙박시설</u> 4. <u>판매 및 영업시설</u> 5. <u>위락시설</u> 6. <u>공공용 시설중 방송국, 통신용 시설</u> 7. <u>의료시설중 병원</u> 8. <u>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u> <p style="text-align: center;"><신 설></p>	<p><u>제2조(문화예술공간의 설치권장)</u> 시장은 법 제5조제2항 및 영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연장, 전시장 등의 문화예술공간을 설치하도록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자(이하 “건축주” 라 한다) 에게 권장하여야 한다.</p> <p><u>제2조의2(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u> <u>법 제9조 및 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을 하고자 하는 건축주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에 대하여</u></p>

현 행	개 정 안
<p>제3조(미술장식 설치에 관한 통보 등) ①시장은 영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 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이하 “건축주” 라 한다)에게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미술장식을 설치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p>	<p>미술장식품을 설치하여야 한다. 1.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한다) 2. 제1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바목에서 자목까지의 시설은 제외한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3.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집회장 및 관람장 4. 판매시설 5. 운수시설(항만시설 중 창고기능에 해당하는 시설 및 집배송시설은 제외한다) 6. 의료시설 중 병원 7. 업무시설 8. 숙박시설 9. 위락시설 10. 방송통신시설(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 하는 것은 제외한다)</p> <p>제3조(미술장식 설치에 관한 통보 등) ①----- 영 제12조 ----- ----- ----- 법 제9조 ----- ----- -----</p>

현 행	개 정 안
<p>② ~ ③ (생략)</p> <p>제5조(미술장식에 사용하는 건축비용의 비율) 영 제2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미술 장식에 사용하는 건축비용의 비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p> <p>1. 영 제24조제1항제1호의 공동주택 : 1천분의 1이상</p> <p>2. 영 제24조제1항제2호 내지 제9호의 건축물 : 1천분의 5이상</p> <p>제7조(설치) 영 제24조의3 규정에 의하여 미술장식의 가격 및 예술성 등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감정평가를 위하여 미술, 건축, 환경, 공간디자인, 도시계획분야 등의 전문가 및 시민대표 등으로 구성되는 포항시미술장식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p>	<p>② ~ ③ (현행과 같음)</p> <p>제5조(미술장식에 사용하는 건축비용의 비율) 영 제12조 ----- ----- -----</p> <p>1. 영 제12조제1항제1호의 공동주택 : 1천분의 1 이상 1천분의 7 이하</p> <p>2. 영 제12조제1항제2호 내지 제10호의 건축물 : 1천분의 5 이상 1천분의 7 이하</p> <p>제7조(설치) 영 제14조 ----- ----- ----- ----- ----- ----- ----- ----- -----</p>

1. 개정이유

문화예술진흥법 및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의 조항의 변경 및 문화예술공간의 설치권장 대상건축물이 추가됨에 따라 포항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설치에 관한조례를 개정하여 운영에 원활을 기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가. 문화예술 공간의 설치권장 대상건축물에 관한 문화예술진흥법 및 시행령 조항의 변경 및 설치권장 대상건축물 추가 (안 제2조)
- 나. 미술장식 설치에 관한 통보에 관한 조항의 변경 (안 제3조)
- 다. 미술장식에 사용하는 건축비용의 비율에 관한 조항의 변경 (안 제5조)
- 라. 포항시미술장식심의위원회의 설치 조항의 변경 (안 제7조)

포항시의회에서 의결된 포항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포항시장 박승호

2009년 6월 16일

포항시 조례 제 943호

포항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

포항시 시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1조 중 “1,000분의 1.5” 를 “1,000분의 1.4” 로 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적용기한) 제91조의 개정 규정은 2009년도 도시계획세 납세의무 성립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91조(세율) 도시계획세의 세율은 제 89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의 <u>1,000분</u>의 <u>1.5</u>로 한다.</p>	<p>제91조(세율) 도시계획세의 세율은 제 89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의 <u>1,000분</u>의 <u>1.4</u>로 한다.</p>

1. 개정이유

- 지방세법 개정('09.2.6)에 따라 올해부터 재산세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하여 산정토록 개편되었으며,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주택 60퍼센트, 토지 및 건축물은 70퍼센트로 지방세법시행령에 규정 예정
- 도시계획세는 재산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준용토록 되어있으나, '09년의 경우 단순히 재산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준용하는 경우 도시계획세의 부담이 늘어나므로 세율인하를 통하여 납세자의 세부담을 완화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도시계획세의 세율을 현행 1,000분의 1.5에서 1,000분의 1.4로 인하 함

포항시의회에서 의결된 포항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포 항 시 장 박 승 호

2009년 6월 16일

포항시 조례 제 944 호

포항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직무 외의 행위로서 타인의 위해를 구제하다가 신체의 부상을 입은 자와 그 가족 및 사망한 자의 유족에 대하여 법에 정한 보상 등 국가적 예우 이외에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추가로 위로금 등을 지원함으로써 희생한 자의 숭고한 정신과 행동을 널리 기리고 시민의 귀감으로 삼아 지역사회 정의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의사자”란 법 제2조제2호 규정에 따른 사망자 중 법 제4조 규정에 따라 의사상자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의사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2. “의상자”란 법 제2조제3호 규정에 따른 부상자 중 법 제4조 규정에 따라 의사

상자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의상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 관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시민이 법 제3조 규정에 따른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의사자 또는 의상자가 된 때
2. 관외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국민이 시 관할구역 내에서 법 제3조 규정에 따른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의사자 또는 의상자가 된 때

제4조(지원사업 등) ①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국가 보상금의 지급 및 보호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의사자의 유족 또는 의상자 및 그 가족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의사자의 유족에게는 법 제8조 및 제9조 규정에 따른 국가보상금 이외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1천만원 이하의 특별위로금을 지급한다.
2. 의상자에게는 법 제8조 및 제9조 규정에 따른 국가보상금 이외에 같은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2조 규정에 따른 부상의 정도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특별위로금을 지급한다.
 - 가. 1급~2급 : 6백만원 이하
 - 나. 3급~4급 : 4백만원 이하
 - 다. 5급~9급 : 2백만원 이하
3. 그 밖에 의사자 및 의상자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그 가족의 보호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예우 등) 시장은 의사자 또는 의상자가 보여준 살신성인의 숭고한 희생 정신과 용기가 존중되고 시민의 귀감이 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포항시 포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 포상
2. 시 단위 각종 행사시 우선적 초청 및 공적소개 등 예우 실시

- 3. 포항시사 등 향토지 발간 시 공적 게재
- 4. 그 밖에 의사상자를 위하여 예우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신청) 의사상자와 그 가족 또는 의사자의 유족이 법 제5조 규정에 따라 의사상자 보호를 신청한 경우에는 이 조례의 적용을 받기 위하여 신청한 것으로 본다.

제7조(준용 등) ①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의사상자 등에
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안이유

타인의 위해를 구제하다가 신체의 부상을 입은 자와 그 가족 및 사망한 자의 유족에 대하여 국가적 예우 이외에 포항시 차원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숭고한 희생정신을 시민의 귀감으로 삼아 사회정의 실현에 기여코자 함.

2. 주요골자

가. 용어의 정의(안 제2조)

- 의사자 및 의상자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4조에 의거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나. 적용범위(안 제3조)

- 포항시민이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의사자 또는 의상자가 된 때
- 타 지역 사람이 우리 시 관내에서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의사자 또는 의상자가 된 때

다. 지원사업 등(안 제4조)

- 의사자 특별위로금 : 1천만 원 이하
- 의상자 특별위로금 : 1급 ~ 9급까지 부상정도에 따라 차등지급
 - 1급 ~ 2급 : 6백만원 이하 - 3급 ~ 4급 : 4백만원 이하
 - 5급 ~ 9급 : 2백만원 이하

라. 예우 등(안 제5조)

- 「포항시 포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 포상
- 시 단위 각종 행사 시 초청 및 공적소개 등 예우
- 포항시사 등 향토지 발간 시 공적 게재 등

포항시의회에서 의결된 포항시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포 항 시 장 박 승 호

2009년 6월 16일

포항시 조례 제 945 호

포항시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36조 및 제47조에 의하여 노인들의 친목도모, 취미활동, 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 교환과 기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인 경로당의 운영 및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경로당”이라 함은 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 취미활동, 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기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신고 된 경로당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4조(경로당 지원) ① 시장은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한 사항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 1. 경로당 시설의 개·보수비
- 2. 경로당 시설의 운영비 및 냉·난방비
- 3. 경로당 시설 환경개선 사업비
- 4.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

② 시장은 이용인원, 시설규모, 운영관리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계획 수립) ① 시장은 재정여건과 노인복지서비스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경로당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1. 경로당 설치 사업비 지원계획
- 2. 경로당 운영비 등 지원계획
- 3.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여가활동 지원 계획 등

② 시장은 경로당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운영실태를 조사하고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경로당 운영 실태조사 결과 회원 이용률이 현저히 저조하거나 기능이 상실되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경로당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제6조(프로그램 개발 등) ① 시장은 노인복지서비스의 개선과 경로당의 기능 강화를 위하여 교육 및 여가활동 등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항에 의한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각종 프로그램 개발을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하여 경로당에 지원 할 수 있다.

제7조(시설관리) 시장은 관내 경로당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일정기간을 정하여 일제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개·보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금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미 교부한 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 1. 법령 또는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 2.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 지원금을 사용하였을 때
-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은 때

제9조(지도·감독) 시장은 경로당 시설에 대해 다음 사항을 지도·감독할 수 있다.

- 1. 시설이용 및 회계에 관련된 사항
- 2. 회원명부 및 행정기관과의 관련 문서

제10조(준용) 보조금 교부 등에 관한 사항은 「포항시 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정이유

「노인복지법」 제36조 및 제4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인 경로당에 대하여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운영과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정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가. 경로당 지원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 나. 지원대상 경로당과 경로당 지원사업, 지원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제4조, 제5조)
- 다. 프로그램의 개발, 시설관리, 지원금 반환 및 지도 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포항시의회에서 의결된 포항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포항시장 박승호

2009년 6월 16일

포항시 조례 제 946호

포항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포항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7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7】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제12조제1항관련)

시 설 물	설 치 기 준
1. 위락시설	○ 시설면적 67㎡당 1대(시설면적/67㎡)
2.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을 제외한다), 판매 및 영업시설, 의료시설(정신병원·요양소 및 격리병원을 제외한다), 운동시설(골프장·골프연습장 및 옥외수영장을 제외한다), 업무시설(오피스텔을 제외한다), 공공용시설중 방송국	○ 시설면적 100㎡당 1대 (시설면적/100㎡)
3. 제1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 바목 및 사목을 제외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 시설면적 200㎡당 1대 (시설면적/200㎡)
4.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을 제외한다)	○ 시설면적 50㎡초과 150㎡ 이하 : 1대 ○ 시설면적 150㎡초과 : 1대에 150㎡를 초과하는 100㎡당 1대를 더한 대수 [1+{(시설면적-150㎡)/100㎡}]
5. 다가구주택, 공동주택(기숙사를 제외한다), 업무시설중 오피스텔	○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주차대수. 이경우 오피스텔의 전용면적은 공동주택의 전용면적 산정방법을 따른다.
6. 골프장,골프연습장,옥외수영장, 관람장	○ 골프장 : 1홀당 10대(홀의 수×10) ○ 골프연습장 : 1타석당 1대(타석의 수×1) ○ 옥외수영장 : 정원 15인당 1대(정원/15인) ○ 관람장 : 정원 100인당 1대(정원/100인)
7. 그 밖의 건축물	○ 시설면적 300㎡당 1대. 다만, 산업단지내 공장용건축물은 500㎡당 1대(시설면적/500㎡)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별표 7】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제12조제1항관련)</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시 설 물</th> <th style="text-align: center;">설 치 기 준</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1 ~ 6 (생 략)</td> <td style="text-align: center;">(생 략)</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7. 그 밖의 건축물</td> <td> ○ 시설면적 300㎡당 1대. 다만, 산업단지 내 공장용건축물은 350㎡당 1대(시설면적/350㎡) </td> </tr> </tbody> </table>	시 설 물	설 치 기 준	1 ~ 6 (생 략)	(생 략)	7. 그 밖의 건축물	○ 시설면적 300㎡당 1대. 다만, 산업단지 내 공장용건축물은 350㎡당 1대(시설면적/350㎡)	<p>【별표 7】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제12조제1항관련)</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시 설 물</th> <th style="text-align: center;">설 치 기 준</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1 ~ 6 (현행과 같음)</td> <td style="text-align: center;">(현행과 같음)</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7. 그 밖의 건축물</td> <td> ○ 500㎡당 1대 (시설면적/500㎡) </td> </tr> </tbody> </table>	시 설 물	설 치 기 준	1 ~ 6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7. 그 밖의 건축물	○ 500㎡당 1대 (시설면적/500㎡)
시 설 물	설 치 기 준												
1 ~ 6 (생 략)	(생 략)												
7. 그 밖의 건축물	○ 시설면적 300㎡당 1대. 다만, 산업단지 내 공장용건축물은 350㎡당 1대(시설면적/350㎡)												
시 설 물	설 치 기 준												
1 ~ 6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7. 그 밖의 건축물	○ 500㎡당 1대 (시설면적/500㎡)												

1. 개정이유

철강산업도시인 우리지역 특성상 공단지역의 부설주차장 수요가 적은 점을 감안하여 산업단지내 공장용 건축물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일부 완화함으로써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자 현행 제도를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부설주차장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 중 산업단지 내 공장용 건축물을 현행 350㎡당 1대를 500㎡당 1대로 완화.

공 고

포항시공인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및 폐기 공인의 인영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포항시장 박승호

2009. 6. 15

공 인 공 고

포항시공고 제2009-727호

- 1. 등록공인 사용개시 및 폐기일 : 2009. 6. 16
- 2. 등록 및 폐기사유 : 공인 마모로 인한 개각 등
- 3. 신조 공인명 및 인영 : 붙임 1
- 4. 폐기 공인명 및 인영 : 붙임 2

붙임 1. 신조공인

공 인 명	규 격	인 영	비 고
포 항 시 남 구 오 천 읍 장 인	한글전서체 2.1Cm정방형		공인마모로 개각

붙임 2. 폐기공인

공 인 명	규 격	인 영	비 고
포 항 시 남 구 오 천 읍 장 인	한글전서체 2.1Cm정방형		공인마모로 폐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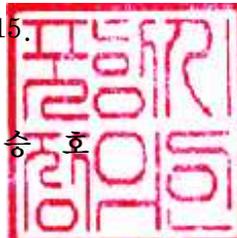
포항시 공고 제 2009 - 729호

무단방치차량강제처리(폐차)공고

우리시 관내 노상 등에 무단 방치한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 같은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 폐차코자 하오니 자동차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공고기간 내에 자진처리 및 필요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라며, 기간내 이행하지 않을 경우 차량은 강제 폐차함은 물론 차량소유자 및 점유자에게 같은법 제85조의 규정에 의거 통고처분 (150만원이하의 범칙금)되며, 처분에 불응할 경우 관할 지방검찰청에 사건 송치되어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됨을 알려 드립니다.

2009. 06. 15.

포항시장 박승호



- 1. 공고기간 : 2009. 06. 15. ~ 2009. 06. 30. (15일간)
- 2. 폐차장소 : 신진폐차장, 포항종합폐차장, 동해지구종합폐차장,
 홍해종합폐차장, 태평양종합폐차장(주), 대원종합폐차장
- 3. 폐차예정일 : 공고기간 종료 이후
- 4. 문의처 : 포항시청 교통행정과 자동차관리담당자
 ☎(054)270-3643
- 5. 공시송달은 공고로 갈음합니다.
- 6. 강제처리대상차량 : 붙임 내역참조

공고처리 내역

◆ 총건수 : 18 ◆ 공고기간 : 2009-06-15에서 2009-06-30까지

관리번호	자동차번호		차 명 주민번호	주 소	방치장소		이해관계
	성 명	성 명			방치장소	보관장소	
2009-55	전남93가5758 김영수	포터슈퍼캡 560307-*****	전라남도 장성군 북이면 죽청리 210번지 6/1	포항시 남구 연일읍 오 천리 764-6 신진폐차장 내에	장성군정상은, 환보		
2009-56	전남91나2276 정대영	와이드봉고더블 캡 700417-*****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 문덕 리 325-10(11/11) B동 102호	포항시 남구 연일읍 오 천리 764-6 신진폐차장 내에	포항남부경찰서경교		
2009-57	울산70녀4980 이기명	싼타모플러스 700328-*****	전라남도 광양시 중동 1686번지 성 호아파트 103-909	포항시 남구 연일읍 오 천리 764-6 신진폐차장 내에	울산남부경찰서경교 삼성캐피탈(주)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2가 150번지2002가단14258 포항시청교행 울산광역시남부경찰서경교 포항시북구청 건교 현대캐피탈(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3-4단지 울산동부경찰서경교 울산광역시 동구정지세 흥성군정지경 울산서부경찰서경교		
2009-58	서울85녀7284 김새로미	코란도11-벤 860730-*****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대신동 1호	포항시 남구 연일읍 오 천리 764-6 신진폐차장 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전주남부지사직관 서울특별시 중서초구정산한, 세이, 교행, 기한 서울특별시중구경찰청		
2009-59	서울81모2850 이승웅	와이드봉고킹캡 440817-*****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동 1090번 지	포항시 남구 연일읍 오 천리 764-6 신진폐차장 내에	서울특별시강서구청환위, 교행, 세우, 주차 서울강서경찰서교행 서울특별시강동구청교행 근로복지공단서울남부지사장수		

2009-60	부산30누6394 한길영	칼로스 1.5S0HC 750226-*****	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동 98번지 1호 23/6 주공아파트 205동 1509호	포항시 남구 연일읍 오천리 764-6 신진페차장 내에	삼성카드(주)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1가 87번지2003카단27309 부산광역시 북구청세무, 교통부 산 북부경찰서경교 LG카드(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79번지단지
2009-61	경북31라2429 김기영	수퍼살롱2.0AT 640824-*****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연일읍 생지리 29번지 3호 2/	포항시 남구 연일읍 오천리 764-6 신진페차장 내에	포항시차량등록사업소차등 포항북부경찰서교통 포항시남구청세무,건교 포항시북구청세무 포항남부경찰서교통
2009-62	경북29가3165 윤중환	쏘나타111.8 820425-*****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대신동 10번지 17호 22/1	포항시 남구 연일읍 오천리 764-6 신진페차장 내에	포항시청교통 포항북부경찰서교통 포항시차량등록사업소차등 포항시북구청세무 LG카드(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79번지단지
2009-64	경북27다1627 한준호	프리스1.8AT 780308-*****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상도동 597번지 20호 21/3	포항시 남구 연일읍 오천리 764-6 신진페차장 내에	포항시청교통 포항남부경찰서교통 포항시차량등록사업소차등 포항시북구청세무,건교
2009-65	경기46구4129 모홀리인터내셔널(주)	에스페로1.5AT 130111-*****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고등동 259번지 6호 터미널타워빌딩	포항시 남구 연일읍 오천리 764-6 신진페차장 내에	수원시관선구청세무 수원시팔달구청세무, 환위수원시차량등록사업소차등
2009-66	65라6532 한연희	아벨라 591007-*****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죽도동 340번지 27호 39/3 상도주막 나눔 44호	포항시 남구 연일읍 오천리 764-6 신진페차장 내에	포항시남구청사회 부산광역시동구청교통 부산광역시연제구청교통 부산광역시부산진구청교통 부산진구청경찰서교통 부산광역시청교관 진해시청세무,교관 포항시북구청건교,세무 포항시차량등록사업소차등 포항시청환위 LG카드(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79번지단지

2009-67	61다3373 정상현	엘란트라도매 트 700724-*****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득량동 141 번지 4/1 득량아파트 1동 209호	포항시 남구 연일읍 오 천리 764-6 신진폐차장 내에	포항시청정소, 환위 포항시남구청건교, 세무 포 항시차량등록사업소차등 포항시북구청건교, 세 무
2009-68	10러16895 박일도	쏘나타투1.8 671024-*****	울산광역시 북구 상안동 358번지 1 호 5/8 쌍용아진그린타운 105동 1307호	포항시 남구 연일읍 오 천리 764-6 신진폐차장 내에	울산광역시북구청교통, 지세, 환위 울산중부경 활서경교 포항시남구청건교 근로복지울산지사 납부
2009-71	경북8다2496 이환이	농촌형다목적트 럭세레스 490502-*****	경상북도 경주시 강동면 인동리 196번지	포항시 남구 장흥동 140-8 동해지구종합폐차 장내에	경주시청환경, 강동, 교행
2009-73	대전30구1127 김시경	엘란트라 560104-*****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동99번지6 호 동부썬빌 503호	포항시 남구 장흥동 140-8 동해지구종합폐차 장내에	대전광역시서구청환경, 세무, 교통 대전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차등 대전서부경찰서경교 대전 둔산경찰서경교
2009-75	54누5917 김진영(중부자동차상 사)	그랜저 650801-*****	대구광역시 달서구 용산동 용산블 루빌타운 103-305	포항시 북구 흥해읍 마 산리 147번지 흥해소망 교회 옆 도로상에	포항시차량등록사업소차등 포항시청교행 포항 북부경찰서교통 부산광역시중구청교통 포항시 남구청건교 대전광역시서구청교통 대전광역시 청대교 대구광역시달서구청환경, 장수 포항시북 구청건교
2009-76	대구2도7585 박철완	프리스1.8AT 590219-*****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동 1896번지 18호 6/2 203호	포항시 남구 오천읍 문 덕11리 375-6 모건물 주 차장내에	대구광역시중구청지교, 교행, 세무 경산시청교 행 대구광역시달서구청교통, 세무, 장수, 환경 장 성카드(주)유석철 서울특별시 종로구 연지동 1-7사건2004카단13256 대구광역시서구청교통 대구광역시시설관리공단주차 대구성서경찰서경 교 대구광역시남구청지교, 세무

2009-81	경북27나4689 한흥식	아반떼 760702-*****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죽도동 199 번지 16호 25/1	포항시 남구 해도 1동 33-207 남동수신경외과 영 도로상에	포항시 북구청사회, 건교, 세무 포항시청교행, 환 위 포항북부경찰서경교 포항시차량등록사업소 차등 국민건강보험공단포항북부지사징수 서울 특별시양천구청교지 서울특별시강남구청교지 포항시남구청건교
---------	------------------	---------------------	------------------------------------	--	--

포항시의회공고 제 5호

第156回 浦項市議會(第1次 定例會) 集會公告

地方自治法 第44條 및 같은법 시행령 第54條, 浦項市議會 會期와 그 運營 等に 關한 條例 第4條의 規定에 따라 第156回 浦項市議會(第1次 定例會)를 다음과 같이 集會함을 公告합니다.

日時 : 2009年 6月 22日(月曜日) 午前 11時 30分

場所 : 浦項市議會 本會議場

2009년 6월 12일

浦項市議會議長 崔 榮 萬